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보고서

2001.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81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1. 7. 3)
제81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2001. 7.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가. 제안이유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 자료(결산서에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626억 3,21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새주소부여사업외 13건이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40억2,028만6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666억5,244만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777억 3,089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6.6%로 예산현액보다 110억7,844만8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894억7,804만2천원 대비 실제수납율은 93.8%로 징수결정액보다 117억4,714만7천원이 미징수 되었음.

○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이 810억7,692만6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3억8,656만8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3억964만2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041억3,371만6천원과 대비한 실제 수납율은 약 88.7%로 '99년도의 87%보다는 실제수납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 세입과목중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과년도 구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7억2,453만4천원으로 당초 징수목표액 4억6,705만원 보다는 2억5,748만4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체납징수결정액 33억2,924만원과 대비한 실제수납율은 약 21.7%로 '98년도의 14.2%와 '99년도의 17.4%보다는 체납징수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수납율은 역시 저조하다고 사료되므로 체납사유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626억 3,216만1천원이었으나 사업계획 일정변경에 의한 새주소부여사업비와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구 입비외 11건이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40억2,028만6천

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666억5,244만7천원 중 지출액은 1,184억7,644만9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이월액 265억9,677만7천원은 명사이월된 구민회관건립비외 7건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신공덕동청사 신축비외 35건이 되겠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99년도의 12건에 비하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됨.

○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9%에 해당하는 215억7,921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발생비율은 '99년도의 22%보다는 다소 감소되었다고 사료되고, 특히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액 88억4,724만원 대비 약 26.1%에 해당하는 23억978만2천원이 불용된 바 '99년도의 22.6%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연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불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7억879만5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26억1,763만1천원으로 당초 세입목표보다는 9억883만6천원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370억4,196만4천원과 대비한 실제수납율은 약61%로 '99년도의 57%보다는 다소 증가되었고, 세입과목중 징수결정된 과년도 체납액은 131억8,912만3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4억7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약 11%의 징수율로 극히 저조한 징수실적이 라고 사료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217억879만5천원의 92.8%에 해당하는 201억4,683만원이 불용된 것은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대상부지가 현실적 이해관계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한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예산 절감액이 다른 국에 비하여 기획재정국이 적은 이유는?

○ 답변요지(염을렬 기획재정국장) :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절감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절감부분도 참고하여 편성하도록 할 것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장) : 체납세액의 누적액수가 굉장한데 체납세 징수독려반 편성 등 징수대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초과징수는 징수결정액 예측 잘못이 아닌가?

○ 답변요지(염을렬 기획재정국장) : 체납에 대하여 봉급압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출국정지요청, 신용불량자통보 등을 하고 있으며, 징수목표 설정액은 총 체납액의 17%정도를 산정하였고, 체납세액은 무조건 많이 받아 내는 것이 목표임.

○ 질의요지(윤한호 위원) : 도시개발과 예산중 공고료가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당초 예산 편성시 도시계획 사업을 25개 책정하였으나, 시행은 6개로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공고료가 불용된 것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218억의 92.8% 201억 여원이 불용된 것은 극심한 주차난 문제를 외면한 복지부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 답변요지(신동문 건설교통국장) : 주택가 공동주차장 시설을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적정면적 200평 내외의 부지선정과 감정가에 의한 매입 등 사업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동별 주차장 1개소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주기 바람.

○ 답변요지(신동문 건설교통국장) : 아현1동 외5개 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불용액 5억 여원중 사업계획변경 취소는 무엇인가?

○ 답변요지(윤길자 보건소장) :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7월부터 원외 처방전 발급에 따라약품구입비 일부가 불용 됨.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보건행정과의 급양비가 불용된 사유는?

○ 답변요지(유승권 보건행정과장) :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과 지도과 및 의약과의 업무성격상 초과근무 사유가 없어 불용되었으며,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를 반영하여 50% 삭감 편성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6.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제출내역

-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 자료(결산서에 포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세입 · 세출결산 총괄설명

□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194,396,69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6,375,544,732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4,396,691,000원(전년도 이월금 4,020,286,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974,148,337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80,401,396,39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80,401,396,39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9,551,952,930원
 - 사고이월 7,130,334,030원
 - 계속비이월 0원
 -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25,256,10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393,853,330원임.

□ 2000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166,652,44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730,895,01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66,652,447,000원(전년도 이월금 4,020,286,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476,449,837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9,254,445,17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59,254,445,17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19,551,952,930원
- 사고이월 7,044,824,590원
- 계속비이월 0원
-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9,386,19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38,281,463원임.

□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현액 27,744,24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44,649,71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7,744,24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 대하여
지출액은 7,497,698,5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1,146,951,21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1,146,951,21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85,509,44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05,869,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55,571,867원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6,035,44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27,018,06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035,44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021,243,71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774,35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5,774,35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74,353원임.

○ 주차장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21,708,79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617,631,65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1,708,79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대하여
지출액은 1,476,454,79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1,141,176,86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1,141,176,864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85,509,44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05,869,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49,797,514원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㉓	세입결산액 ㉔	세출결산액 ㉕	이 월 액 ㉖(㉗-㉘)					
				계 ㉗	명시이월 ㉘	사고이월 ㉙	보 조 금 사용잔액㉚	순세계잉여금 (㉗-㉘-㉙-㉚)	
합 계	190,376,405,000	206,375,544,732	125,974,148,337	80,401,396,395	19,551,952,930	7,130,334,030	1,325,256,105	52,393,853,330	
일반회계	162,632,161,000	177,730,895,015	118,476,449,837	59,254,445,178	19,551,952,930	7,044,824,590	519,386,195	32,138,281,463	
특별 회계	계	27,744,244,000	28,644,649,717	7,497,698,500	21,146,951,217	0	85,509,440	805,869,910	20,255,571,867
	의료 보호 기금	6,035,449,000	6,027,018,063	6,021,243,710	5,774,353	0	0	0	5,774,353
	주차장	21,708,795,000	22,617,631,654	1,476,454,790	21,141,176,864	0	85,509,440	805,869,910	20,249,797,514

세입결산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세입 예산현액 ㉑	징수 결정액 ㉒	수납액			미수납액 (㉓-㉔)	미수납액처리		비율 ㉕/ ㉑	
			수납총액 ㉓	과오납 반환액㉔	실제수납액㉕ (㉓-㉔)		결손처분	이월액		
합계	194,396,691,000	232,656,503,939	206,639,577,752	264,033,020	206,375,544,732	26,280,959,207	332,430,210	25,948,528,997	106.2	
일반회계	166,652,447,000	189,478,042,505	177,991,889,035	260,994,020	177,730,895,015	11,747,147,490	329,674,400	11,417,473,090	106.6	
특별 회계	계	27,744,244,000	43,178,461,434	28,647,688,717	3,039,000	28,644,649,717	14,533,811,717	2,755,810	14,531,055,907	103.2
	의료 보호 기금	6,035,449,000	6,136,496,830	6,027,018,063	0	6,027,018,063	109,478,767	2,755,810	106,722,957	99.9
	주차장	21,708,795,000	37,041,964,604	22,620,670,654	3,039,000	22,617,631,654	14,424,332,950	0	14,424,332,950	104.2

세출결산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㉑	예산성립후 증 감 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원인 행위액㉔	지출액㉕	다음연도 이월액㉖	불 용 액 (㉓-㉕-㉖)	
합 계	190,376,405,000	4,020,286,000	194,396,691,000	152,608,312,907	125,974,148,337	26,682,286,960	41,740,255,703	
일반회계	162,632,161,000	4,020,286,000	166,652,447,000	145,025,104,967	118,476,449,837	26,596,777,520	21,579,219,643	
특별 회계	계	27,744,244,000	0	27,744,244,000	7,583,207,940	7,497,698,500	85,509,440	20,161,036,060
	의료 보호 기금	6,035,449,000	0	6,035,449,000	6,021,243,710	6,021,243,710	0	14,205,290
	주차장	21,708,795,000	0	21,708,795,000	1,561,964,230	1,476,454,790	85,509,440	20,146,830,770

예비비지출

200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817,987,000원으로서 구청사 별관 매입외 3건에 286,46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2,265,1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34,198,860원으로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㉒	지출액㉓	이월액㉔	불용액㉕ (㉑-㉓-㉔)	처리일자		지출사유
								지출결 정일자	지출 일자	
세항	세세항	사업명								
합 계			286,464,000	152,265,140	152,265,140	0	134,198,860			
서무관리	자체사업	구청사별관 매입	5,204,000	5,204,000	5,204,000	0	0	2000. 12.04	2000. 12.07	구청사별관 매입 부족분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109,338,000	109,337,980	109,337,980	0	20	2000. 05.08	2000 05.09	특별법시행에 따른 우리구 임용결격직원 2명의 퇴직 보상금 확보
청소관리	자체사업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비용	160,000,000	30,187,900	30,187,900	0	129,812,100	2000. 07.14	2000. 08.29	김포매립지의 반입금지계획 에 따른 민간 위탁비용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1,922,000	7,535,260	7,535,260	0	4,386,740	2000. 12.16	2000. 12.19	우리구부담분 확보